

3. 建築士法施行規則中 改正令

建設部令 제509호 1992. 6. 25

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중 “6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한다.
[별지 제7호서식]의 수수료란중 “6천원”

을 “1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조정하여 시험수수료의 현실화 및 건축사자격시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. <건설부 제공>

주택건설 2백만호 너와나의 보금자리